건강가정기본법

[시행 2024. 9. 27.] [법률 제20417호, 2024. 3. 26., 타법개정]

여성가족부 (가족정책과) 02-2100-6282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·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,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본이념)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·발전되어야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 1. 16.>
 - 1. "가족"이라 함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.
 - 2. "가정"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・양육・보호・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 - 2의2. "1인가구"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.
 - 3. "건강가정"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.
 - 4. "건강가정사업"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(이하 "가정문제"라 한다)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・양육・보호・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.
- **제4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**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.
 -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, 가정친화적 환경조성,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6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**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 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가족가치) 가족구성원은 부양·자녀양육·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.
- 제8조(혼인과 출산)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·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·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. 29.>
- 제9조(가족해체 예방)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지역사회자원의 개발·활용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1조(정보제공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, 가족교육·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, 5, 19,>
- 제12조(가정의 날)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・가정・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,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.

제2장 건강가정정책

제13조 삭제 <2011. 9. 15.>

제14조 삭제 <2011. 9. 15.>

- 제15조(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)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9. 15.>
 -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개정 2018. 1. 16.>
 - 1.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
 - 2.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
 - 3.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
 - 4.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
 - 5.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
 - 6.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
 - 7.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
 - 8.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
 - 9.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
 - 10.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
 -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 -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개정 2005. 3. 24, 2008. 2. 29, 2010. 1. 18, 2011. 9. 15., 2020. 5. 19.>
- 제16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4, 2008. 2. 29, 2010. 1. 18, 2011. 9. 15.>
 - ②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**제17조(시 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)**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4, 2008. 2. 29, 2010. 1. 18, 2011. 9. 15.>
 -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9. 15., 2016. 12. 20.>
- 제18조(계획수립의 협조) ① 여성가족부장관,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·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3. 24, 2008. 2. 29, 2010. 1. 18, 2011. 9. 15.>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제19조(교육·연구의 진흥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.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·제공하여야 한다.
- 제20조(가족실태조사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,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 5. 19.>
 -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·성별·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신설 2018. 1. 16.>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
 - 2. 29., 2010. 1. 18., 2018. 1. 16.>

제3장 건강가정사업

제21조(가정에 대한 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- 1. 가족구성원의 정신적・신체적 건강지원
- 2.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
- 3. 안정된 주거생활
- 4. 태아검진 및 출산・양육의 지원
- 5. 직장과 가정의 양립
- 6. 음란물・유흥가・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
- 7.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
- 8.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
- 9.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ㆍ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
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·출산·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·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6. 5. 29.>
-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, 노인단독가정, 장애인가정, 미혼모가정, 공동생활가정,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 10. 17.>
-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21조의2(위기가족긴급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・양육・보호・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(이하 "위기가족긴급지원"이라 한다)을 하여야 한다.
 - ②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아이돌봄지원,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
 - 2. 가족상담, 집단프로그램,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ㆍ정서지원
 - 3. 법률구조, 의료지원, 복지서비스 등 연계
 - 4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
 - ③ 제2항의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2항제2호의 심리·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.
 - ④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- ⑤「긴급복지지원법」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[본조신설 2016. 5. 29.]

제21조의3(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)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, 주소,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5. 29.]

제21조의4(위기가족긴급지원에 대한 비용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6. 5. 29.]

- 제22조(자녀양육지원의 강화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, 방과후 서비스,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(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<신설 2011. 9. 15.>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11. 9. 15.>
 -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·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11. 9. 15.>
- 제23조(가족단위 복지증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・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・부과,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・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·사회, 교육·문화, 체육,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·정책 및 사업을 수립·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**제24조(가족의 건강증진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・유아, 아동, 청소년, 중・장년,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 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- **제25조(가족부양의 지원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・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 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, 보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.
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26조(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이를 예방・상담하고,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,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・부모교육・가족상담・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 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7조(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**제28조(가정생활문화의 발전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.
- 1. 가족여가문화
- 2. 양성평등한 가족문화
- 3.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
- 4.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
- 5. 합리적인 소비문화
- 6. 지역사회 공동체문화
- 7.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
- 제29조(가정의례)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30조(가정봉사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・육아・산후조리・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(이하 "가정봉사원"이라 한다)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 >
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.
 -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- 제31조(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 -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·재산·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 -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 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32조(건강가정교육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결혼준비교육
 - 2. 부모교육
 - 3. 가족윤리교육
 - 4.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
 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
 - 2. 29., 2010. 1. 18.>
- 제33조(자원봉사활동의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.

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

- **제34조(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)**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3. 24, 2008. 2. 29, 2010. 1. 18, 2011. 9. 15.>
- **제34조의2(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설립 등)**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신설 2020. 5. 19.>
- 1. 목적
- 2. 명칭
- 3.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
- 4. 자산에 관한 사항
- 5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- 6. 이사회의 운영
- 7.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
- 8. 회계
- 9. 공고의 방법
- 10. 정관의 변경
- 11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- ⑤ 진흥원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20. 5. 19.>
- ⑥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<개정 2020. 5. 19.>
-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<개정 2020. 5. 19.>
- 1.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
- 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
- 3.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
- 4. 삭제 < 2024. 3. 26.>
- 5.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
- 6.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
- 7.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,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
- 8.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
- 9.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, 연구
-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- 11.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-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.<개정 2020. 5. 19.>
- ⑨ 진흥원은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 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진흥원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6. 3. 2., 2020. 5. 19.>
- ⑩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<개정 2016. 3. 2., 2020. 5. 19.>

[본조신설 2014. 3. 24.]

- 제35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・상담 및 치료,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, 가족문화운동의 전개,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 다)를 설치 •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9. 15.>
 -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(이하 "건강가정사"라 한 다)를 두어야 한다.
 -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.<개정 2018. 1. 16.>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
- 2.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·가정학·여성학 등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
- ④센터의 조직·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·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<개정 2005. 3. 24., 2008. 2. 29., 2010. 1. 18.>
-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신설 2020. 5. 19.>
- 제35조의2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센터가 아닌 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[본조신설 2011. 9. 15.]

제5장 보칙

- **제36조(민간단체 등의 지원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37조(과태료) ① 제3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[본조신설 2011. 9. 15.]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